

# 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교육감
2. 건 명 :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 
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불 임 참 조
4. 검 토 의 견 : 불 임 참 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1월 29일

교육사회위원회  
전문위원 안문환

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이 조례안은 2008년 1월 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 정원 및 보정정원이 고시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,763명에서 34명을 증원한 1,797명으로 하고(안 제2조)

※ 조례의 총정원 1,766명 중 혁신담당 한시 정원(2007. 6. 30.까지) 3명 제외

나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공립 각급학교의 정원을 1,751명에서 1,785명으로 조정함.(안 제2조 제2호)

※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12명은 별도로 교육위원회 조례에 정해져 있음

## 3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고시(2007. 11. 14)되어 정원 총수가 34명 증원되었기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,

## 주요 내용은

-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,763명에서 34명을 증원한 1,797명으로 하고,
-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공립 각급학교의 정원을 1,751명에서 1,785명으로 조정하였음.

##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본 조례안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 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규모가 고시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늘어나는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세부적인 인력운용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